

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

지역과 대학발 초기 창업기업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, 비즈니스모델 사업화를 지원하는 「2024년도 창업중심대학」 초기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1월 12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* 의향서 제출은 발표평가 대상자에 별도 안내될 예정
- 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. 실명정보가 SCI(서울신용평가정보)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(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)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실명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
- * K-Startup 누리집 - 고객센터 - 온라인매뉴얼 - 일반매뉴얼 –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
1

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지역 및 대학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창출
- 지원대상** :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
- 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(7천만원 내외, 최대 1억원), 창업프로그램 등

사업화 자금

창업 아이템, BM 고도화 등 사업화에
소요되는 비용* 지원

* 평가에 따라 차등 배정

창업프로그램

창업교육, 경영지원, 투자유치, 실증·검증,
판로확대, 해외진출, 기관·기업 연계 등

*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상이[별첨 2]

* 사업화 자금,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원

□ 협약기간 :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('24.3월 ~ 12월 예정)

□ 선정규모 : 총 180개 내외

- (유형을 제한하여 선정) 창업중심대학별로 창업기업을 선발하며,
① 대학별 창업 및 ② 지역 일반 유형으로 선정 예정

< 창업중심대학별 창업기업 선정 규모 >

| 창업 중심대학 | ① 대학별 창업 | ② 지역 일반 | ⇒ 180개 내외 선정 (대학별 20개)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지역 제한 없음 |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으로 제한 | |
| | 54개 내외 (대학별 6개 내외) | 126개 내외 (대학별 14개 내외) | |
| 우대사항 |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(1984.1.13. 이후 출생한 자, 1.13일 포함) 50% 선정 예정 | | |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, 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

■ 신청가능 업력 : 2021년 1월 13일 ~ 2024년 1월 12일

■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
■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
■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 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■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([참고 3]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)

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
□ 신청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('24.2.1.)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('24.2.1.)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(지원제외 대상 업종 [참고 1] 참조)

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[참고 2]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(기업)

* 단, '24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

**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(신한은행)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⑨ '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
⑩ '24년 동 사업 (예비)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
⑪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⑫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⑯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신청유형 : [유형 ①] 대학발 창업, [유형 ②] 지역 일반

- 2가지 신청유형 중 제시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선정

* 신청자는 1개 대학 및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중복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

< 전체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선정규모(안) >

| 창업중심대학 | 모집유형 및 대학별 선정 규모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| 유형 ① 대학발 창업 | 유형 ② 지역 일반 | |
| | 지역 제한 없음 | 사업장소재지 기준 신청 지역 제한 | |
| 한양대학교 | 6개 내외 | 서울, 경기, 인천 | 14개 내외 |
| 성균관대학교 | 6개 내외 | | 14개 내외 |
| 한남대학교 | 6개 내외 |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 | 14개 내외 |
| 호서대학교 | 6개 내외 | | 14개 내외 |
| 경상국립대학교 | 6개 내외 | 부산, 울산, 경남 | 14개 내외 |
| 부산대학교 | 6개 내외 | | 14개 내외 |
| 강원대학교 | 6개 내외 | 강원 | 14개 내외 |
| 대구대학교 | 6개 내외 | 대구, 경북 | 14개 내외 |
| 전북대학교 | 6개 내외 | 광주, 전북, 전남, 제주 | 14개 내외 |

*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(1984.1.13. 이후 출생한 자, 1.13일 포함) 50% 선정 예정

[유형 ①] 대학발 창업 [54개 내외]

- 지원요건 : 공고일 기준('24.1.12.), 아래에 정의된 대학발 창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(소속대학, 사업장소재지 무관)

< 대학발 창업 인정범위 (아래 내용 중 1개 이상 필수 충족) >

| 구 분 | 세부 내용 |
|-----|--|
| 소속 | ① 대학(원) 재·휴학생 또는 재(휴)직 중인 교원·교직원이 대표인 창업기업 |
| 인프라 | ② 대학 보육 공간(BI)에 입주 중인 창업기업 |
| 기술 | ③ 대학과의 기술이전(양도) 계약을 체결한 창업기업 |
| 투자 | ④ 대학의 지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 |
| 발굴 | ⑤ 창업중심대학 및 협력기관의 협업을 통해 발굴한 창업기업 |

* 창업중심대학을 포함한 일반대, 전문대, 교육대, 산업대 등 전체 대학을 의미

◆ '대학발 창업' 유형 주요사항

- (소속) 공고일('24.1.12.) 기준 '고등교육법 제2조' 또는 '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, 2, 3, 3의 2호'에 해당하는 대학(원) 재·휴학생(수료생 포함) 또는 '고등교육법 제14조'에 해당하는 재(휴)직 중인 교원·교직원이 대표인 창업기업
 - *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필수 제출
 - * 공고일('24.1.12.) 기준 입학예정자, 졸업생 및 퇴직 교원·교직원 제외
 - * 해외 대학의 경우, 재적·재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필수 제출
- (인프라) 공고일('24.1.12.)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'Bi-NET(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)'상 대학이 운영주체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창업기업
 - * 해당 창업보육센터 확인이 가능한 증빙(입주사실확인서, 공문 등) 필수 첨부
 - * [\[https://www.smes.go.kr/binet\]](https://www.smes.go.kr/binet) - [정보마당] - [센터현황] - [센터검색] - [사업자구분] - [대학]을 통해 해당 여부 확인 필요
- (기술) 공고일('24.1.12.) 기준 동 사업 신청 제품·서비스 관련, 대학(산학협력단 등)을 계약당사자로 기술이전(양도) 계약을 체결한 창업기업
 - * 공고일('24.1.12.) 기준 기술이전(양도)계약서 기반 계약체결 완료 건에 한하며 증빙 필수 제출
- (투자) 공고일('24.1.12.) 기준 대학(산학협력단/기술지주회사 등)으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
 - * 공고일('24.1.12.) 이전 투자계약서 등 계약체결이 완료된 건에 한하며 증빙 필수 제출
- (발굴) 창업중심대학 협력기관과 협업을 통해 발굴된 창업기업 중 창업중심대학 추천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창업기업
 - * 공고일('24.1.12.) 이후 신청 창업중심대학의 추천 대상 창업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한함

[유형 ②] 지역 일반 [126개 내외]

- 지원요건 : 공고일 기준('24.1.12.), 사업장소재지가 사업 신청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 권역에 해당하는 초기 창업기업
 - * 복수의 창업중심대학이 소재한 '수도권', '충청권', '동남권'의 경우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

◆ '지역 일반' 유형 주요사항

※ (권역선택 주의) '지역 일반' 유형 신청기업의 사업장소재지가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의 권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요건검토 탈락 처리

| | |
|-------|---|
| 신청 예시 | 제주시 소재지의 창업기업 A는 전북대에 신청하여야 하며, 부산대에 신청하면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'탈락' 처리 |
|-------|---|

3

선정자 지원내용

□ **지원기간 :**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('24. 3월 ~ '24. 12월 예정)

□ **지원내용 :** 정부지원사업비와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

① **정부지원사업비 :** 시제품 제작, 자재권 취득, BM 개선 등에 소요 되는 사업화 자금 7천만원 내외(최대 1억원)

* 창업 아이템,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

** 정부지원사업비는 창업기업의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
[자기부담사업비 구성 및 예시(총 사업비 1억원 기준)]

| 총 사업비 (예시) | 정부지원사업비 | 자기부담사업비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현금 | 현물 |
| 100% | 총 사업비의 70% 이하 | 총 사업비의 10% 이상 | 총 사업비의 20% 이하 |
| 1억원 (100%) | 7,000만원 (70%) | 1,000만원 (10%) | 2,000만원 (20%) |

- 창업기업은 자기부담사업비를 필수로 납부하여야 하며, 미이행시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
- 창업기업은 자기부담사업비 중 현금 비중을 최소 10%에서 최대 30%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현물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
- 현물은 신청자(대표자)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

② **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:** 교육, 멘토링, 마케팅, 투자유치, 판로 확대,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지원

* 창업중심대학별 세부 프로그램은 대학별 소개자료(별첨 2) 참고

-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: 창업기업 선정 후, 수요조사를 통해 대학별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

공고기간 : '24. 1. 12.(금) ~ 2. 1.(목), 16:00까지

신청·접수기간 : '24. 1. 22.(월) ~ 2. 1.(목), 16:00까지

* 상기 기간 내 제출완료 건에 한하여 인정, 마감기한 내 제출 필수

** 공고 기간과 온라인 신청·접수 기간이 상이하니 재확인 요망

신청방법 :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(www.K-startup.go.kr)

○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

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
*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
***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[별첨3]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

< 신청 시 유의 사항 >

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
* 신청·접수는 16:00 정각에 종료(신규 신청 불가)

②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실명 인증이 필요.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은 실명(개명)정보가 SCI(서울신용평가정보)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-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
(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,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

③ 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

④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

⑤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

⑥ 사업 신청 후 신청 대학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, 창업 프로그램 등 제공(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)

⑦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복수의 창업중심대학에 신청이 불가하며,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 처리

○ 온라인 신청절차

| 절차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------|---|
|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| • www.k-startup.go.kr 홈페이지 접속 |
| ② 사업 공고 세부내용 확인 | • '사업신청관리' - '사업신청' 메뉴에서 '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' 클릭 |
| ③ 기본정보입력 | • 신청자(창업기업 대표자)의 기본정보 입력(1~5단계 입력) • 주관기관 선택 : 9개 창업중심대학 중 1개 선택 |
| ④ 사업계획서 업로드 | • 사업계획서(가점 등 증빙서류 포함)를 업로드하여 저장 ※ 업로드 파일은 50MB 이하로 설정 |
| ⑤ 제출 | • '제출하기' 클릭 및 "접수(제출)완료" 여부 확인 |

※ 사업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[별첨 3] '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' 참고

□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 1부 ※ [별첨 1]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작성(그 외 양식 제출 불인정)
- 기타 제출서류 ※ 해당하는 항목(가점 등)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

|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 | 주의사항 | 비고 |
|--|---|---|
| ① 사업신청서 (시스템 내 자동생성) | 온라인 신청시 입력 | |
| ② 사업계획서 | | |
| ③ 신청 유형별 증빙(대학발 창업 또는 지역 일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발 창업 : 소속, 인프라, 기술, 투자 중 1개 증빙 - 지역 일반 :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|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파일 첨부 | |
| 서류 평가 면제 | • 과학기술전문사관 의무복무를 마친 자 * 공고일('24.1.12.) 기준 최근 2년 이내 전역자 • '23년 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팀 • '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,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기업 • 창업중심대학 협력기관 협업 추천 창업기업 |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 (용량 50MB 유의) |
| 서류 평가 가점 | • '22~'23년 창업중심대학(예비)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기업(2점) • '23년 도전! K-스타트업 국방리그, 국방과학기술리그 통합본선 진출팀(1점) • '22년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연구개발 (R&D) 지원을 통해 창업한 기업(1점) * '23년 실험실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에 한함 | 창업진흥원에서 확인 (별도 제출 불필요) |
| | |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첨부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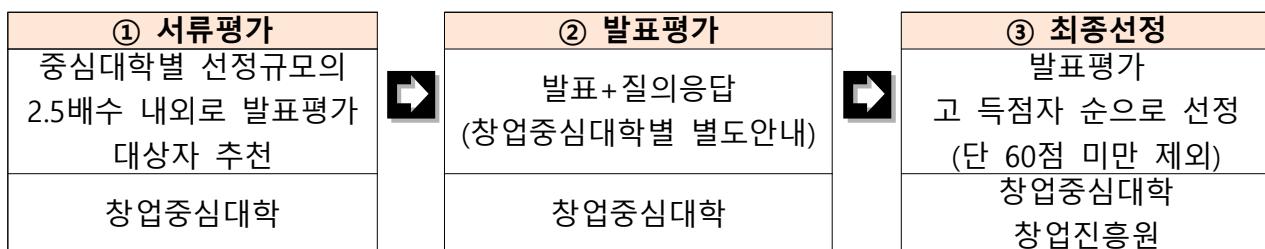
5

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절차 : 총 2단계 평가 (서류 → 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* 선정평가 운영·결과 등 세부사항은 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에서 별도 안내 예정

<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

※ 요건 및 자격검토는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며 요건을 불충족할 경우 탈락 처리

※ 평가단계별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

□ 평가 방법

- ① 요건검토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② 서류평가 :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세부 항목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(최종 선정규모의 2.5배수 내외)

<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 대상 >

| 구분 | 대상자 | 점수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|
| 면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학기술전문사관 의무복무를 마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전역자 '23년 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팀 '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,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기업 창업중심대학 협력기관 협업 추천 창업기업 | - | 과학기술전문사관 확인서 |
| 가점 (최대 2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2~'23년 창업중심대학(예비)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성과평가 종료 후 서류평가시 자동 반영 '23년 도전! K-스타트업 국방리그, 국방과학기술리그 통합본선 진출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2년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연구개발(R&D) 지원을 통해 창업한 기업 * '23년 실험실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에 한함 | 2점 1점 1점 | 창업진흥원에서 확인 (별도 제출 불필요)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|

* 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팀, 국방리그, 국방과학기술리그 통합본선 진출팀의 경우 팀장 또는 창업기업 대표자에 한하여 우대사항 인정

③ 발표평가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* 평가참석 : 대표자 참석이 원칙이며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평가 진행
- ** 평가시간 : 20분 이내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 이내)
- *** 평가방법 :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진행 가능

□ 평가지표

-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신청(대표)자 및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* 창업중심대학별 선정규모와 관계없이,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| 평가항목 | 세부내용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제인식 | •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(문제인식)와 해결방안(필요성) 등 |
| 실현가능성 | •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(개선)방법, 경쟁력 확보 방안 등 |
| 성장전략 | •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전략 등 |
| 팀(기업) 구성 | •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(예정인)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|

□ 최종선정

- 모집유형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,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*를 배정하여 최종선정 공고
 - *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-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(통보일 포함, 3일차 17시까지) 이내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기한 내 협약체결 의향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, 선정취소를 통해 차순위자(예비후보자) 선정
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창업중심대학 또는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 - * 선정평가 결과 선정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
6

유의사항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"형법"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,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, "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", "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"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**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** 수 있습니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"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" 제32조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 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·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 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'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(협약 체결) 불가하며 단, '23년까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 - 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- *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, 평가대상에서 제외
- 동 사업에 신청한 창업기업 대표자(신청자)가 직접 평가과정에 (발표 평가 등)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(통보일 기산, 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창업중심대학에 신청 가능
- 창업중심대학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또는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·녹화 가능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여 선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할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창업지원사업 서류 및 발표평가 대상에서 즉시 제외됨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창업 진흥원·창업중심대학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‘신청자격 및 요건’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‘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신청(대표)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기간이 14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중단 또는 협약해지 될 수 있음
- 창업진흥원과 창업중심대학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계좌)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
* 지정 은행(신한은행)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- 선정자는 신청 창업중심대학이 운영하는 사업화 전용 프로그램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,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^{*}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하며, 미준수시 제재·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

* 정당한 사유 예시 : 법인전환, 경영부진(동분기 매출 60% 이상 감소), 사업자 양도, 인수합병, 면세포기·적용 등

7

기타사항

(시스템 문의) 국번없이 1357

(사업 문의) 창업중심대학(주관기관) 담당자

| 권역별 광역지자체 구분 | | 창업중심대학 | 연락처 1 | 연락처 2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수도권 | 서울, 인천, 경기 | 한양대학교 | 02-2220-2862 | 02-2220-2851 |
| | | 성균관대학교 | 031-290-5656 | 031-290-5687 |
| 강원권 | 강원 | 강원대학교 | 033-250-7644 | 033-250-8975 |
| 충청권 |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 | 호서대학교 | 041-540-9930 | 041-540-9825 |
| | | 한남대학교 | 042-629-8563 | 042-629-7193 |
| 호남권 | 광주, 전북, 전남, 제주 | 전북대학교 | 063-219-5533 | 063-219-5533 |
| 대경권 | 대구, 경북 | 대구대학교 | 053-850-4384 | 053-850-4386 |
| 동남권 | 울산, 부산, 경남 | 부산대학교 | 051-510-7090 | 051-510-7092 |
| | | 경상국립대학교 | 055-772-4673 | 055-772-4675 |

참고 1

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

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| 구분 | 대상업종 | 코드번호 세세분류 |
|----|--|--------------|
| 1 | 일반유통주점업 | 56211 |
| 2 | 무도유통주점업 | 56212 |
| 3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 91249 |
| 4 |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| - |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참고 2

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사업 목록

- 초기창업패키지
- 창업중심대학 (초기 창업기업)
-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)
- 글로벌창업사관학교 (사업화)
- 창업도약패키지 *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
- 창업중심대학 (도약기 창업기업)

참고 3

창업여부 기준표

*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: cert.k-startup.go.kr / 문의처 : 1811-3773

| 구분 | 상세 구분 | | 창업여부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개인기업 | 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 | | 창업 기본요건 |
| | 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 | | 창업아님 창업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| | 창업아님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| 이종창업 | - 창업 창업 |
| | | 동종창업 |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 |
| | | | 창업아님 창업 창업아님 |
| | | | 창업 |
| 법인기업 | 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 | | 창업 기본요건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| 이종창업 | - 창업 창업 |
| | | 동종창업 |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 |
| | | 동종전환 |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|
| | | | 창업 |
| |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| 이종창업 | - 창업 창업 |
| | | 동종창업 |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 면서 최대주주 아님 |
| | | | 창업아님 창업 |
| | 자회사 여부 | 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 | 창업아님 |
| | 과점주주 여부 |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 | 창업아님 |
| | 회사형태 변경 | 동종유지 이종 | 창업아님 창업 |

* **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**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·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* **동종의 범위**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* **과점주주**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* **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** : ① 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
② 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